



가입 · 탈퇴 규정



수원시체육회

가입 · 탈퇴 규정

제정 2021. 12. 30.

개정 2023. 10. 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시체육회 정관 제6조 제1항 및 제10조 제3항에 따른 수원시체육단체(이하 “체육단체”라 한다)의 수원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가입 및 탈퇴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은 본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본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탈퇴”는 본회가 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회원단체 규정에서 정한 회원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3. “올림픽 종목 및 아시아경기대회 종목”은 제8조에 따른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의 올림픽대회(이하 “올림픽” 이라 한다)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안게임”이라 한다)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4.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8조 등급 및 가입심의 당시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제1항 제2조에 의한 대회의 개최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을 말한다.

제3조(종목단체의 가입신청서류) ①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매 회계연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단체 소개서(연혁, 종목설명, 활동개요, 조직 등)
3. 임원 명단(개인별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포함)
5. 단체의 규약 및 제 규정
6. 회원가입을 의결한 대의원총회 자료 및 회의록

7. 단체의 규약 및 모든 규정
8.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9. 선수 및 팀(스포츠클럽 포함), 동호인조직 등록 현황
10. 시·군종목단체 및 산하연맹체 설치 현황
11. 경기대회 및 동호인대회 개최 실적
12. 전년도 사업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서
13. 전년도 수입·지출결산서 및 해당년도 수입·지출예산서
14. 해당 단체의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에 관한 참고자료

② 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연맹이 없는 종목단체는 자료의 제출을 예외로 한다.

제4조(정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정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도내 16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로부터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승인을 받는 종목일 것. 다만, 경기종목 또는 단체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7.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8. 본회의 정관 및 ‘수원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종목이며, 동시에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한 시·군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정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5조(준회원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준회원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도내 10개 이상의 시·군종목단체가 해당 시·군체육회에 있을 것
5.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대회가 연 1회 이상일 것
6.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7. 본회의 규정 및 ‘수원시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전국종합체육대회 종목은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시·군 종목단체가 9개 이상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동계올림픽종목(전국체육대회종목)에 대하여는 시·군종목단체 조직 수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③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준회원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본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수원시를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일 것
2. 종목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수원시를 총괄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해당 종목의 보급도와 경기력 발전성이 인정될 것
5. 본회의 정관 및 ‘회원종목단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목단체의 규정이 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본회가 인정단체로 가입시킬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절차) ①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심의절차는 본회 정관 제10조에 따른다.

② 본회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단체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정단체 또는 준회원

단체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③ 준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 승인일로부터 만 3년이 지나야 정회원단체 승격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회는 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반드시 심사하여야 한다. 인정단체의 준회원단체 승격 경과 기간과 심의 요청 또한 같다. 단, 인정단체 중 동계올림픽 종목(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 선정될 경우 위의 경과 기간을 적용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제8조(등급 및 가입심의) ① 본회는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의 가입요건을 매년 심의한다.

② 등급심의에서 정회원, 준회원단체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가 된다.

③ <삭제 2023. 10. 12.>

④ 본회의 등급 및 가입심의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의 회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탈퇴요청 및 강등·제명) ① 회원단체가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탈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본회 정관 제9조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된 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 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본회는 해당 단체를 제명시킨다.

③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단체에 대해서는 본회 정관 제10조의2에 따라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의 가입요건을 상실하여 회원단체로서의 존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2. 회원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본회 정관, 규정, 지시사항을 위배하여 회원단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임원 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의 사유로 회원단체로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본회 위상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체육발전을 저해하는 회원단체일 경우
5. 본규정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종목단체일 경우
6.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설 2023. 10. 12.>

④ 회원단체가 해산한 경우 본회의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탈퇴신청) 회원단체가 본회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해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탈퇴서
2. 탈퇴이유서
3. 탈퇴를 결의한 총회 회의록

제11조(등체육회 규정의 적용) 등체육회는 본회 수원시종목단체의 동종목단체에 한하여 가입·탈퇴 규정의 가입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